

춘천지방법원 2022. 7. 14 선고 2021나348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7. 14 선고 2021나34838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. 7. 21 선고 2020가단1061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

담당변호사 노용균, 선병주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B

변론종결 2022. 6. 16.

판결선고 2022. 7. 14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. 7. 21. 선고 2020가단1061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3. 체결된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20. 2. 4. 접수 제1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청구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여현주, 판사 신흥호, 판사 장두봉

별지